■ 又陽에세이

영광스러운 날

권이혁
(대종원 명예총재)

2016년 12월 8일(木)이 나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다.

나는 人生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世上을 떠나기 전에 모교인 서울醫大에 감사의 뜻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奬學金을 마련해 전달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재산 상태가 신통치 않은 나는 이리저리 노력하여 1,000만원을 만들어서 12월 5일 서울醫大에 전달했다.

나 개인과 관련된 일은 일절 집안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나의 습성인데 어찌다 이 이야기를 城北洞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둘째 딸 星澤에게 전한 것 같다. 星澤이는 이왕 기부하려면 1억원정도는 喜捨를 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한 것은 같다. 나도 모르게 星澤이는 셋째 딸 東姬와 상의한 모양이다.

12월 8일 두 딸은 서울의대학장실에 함께 가자고하여 그렇게 따랐고, 나는 姜大熙 학장에게 두 딸이 만들어준 1억 원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다. 참으로 기분이 좋았다. 나는 기부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되는 것 같았다.

언젠가 어느 신문에서 '기부를 습관으로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기사를 읽은 일이 있었다. 세상에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다. 나는 이제야 그 心情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12월 10일자 조선일보는 '권이혁,서울대 의대도서관에 1억 기부'라는 표제로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서울대총장과 보건사회부장관을 역임한 권이학(83·사진 왼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8일 두자녀의 부측을 받고 서울대 의대 학장실을 찾아와 1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1974년 내가 의대학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지은 도서관을 다시 짓는다니 감개무량하다"며 "학생들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의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대 의대 1회 졸업생으로 서울대병원장, 문교부장관 등을 지냈다.'

서울의대는 나를 가르쳐주고 키워준 母體이다. 더욱이 姜大熙 학장은 '又同포럼'을 개최해주기도 했고,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事務室도 제공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 나는 서울 大學校 醫科大學과 姜大熙학장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소망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두 딸의 도움으로 이 소망이 해결된 것이다. 두 딸 역시 특별한 재산이있는 처지가 아닌데도 애비를 흐뭇하게 해줬으니 자랑스러운 孝女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특별기획

權氏烈傳 ⑪

民松 權寧禹

(지난호에 이어)

나는 교수들이나 대학방문자에게 대학발전을 위한 자랑거리 세가지와 바람가짐 세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우리재단은 튼튼하고 투명하다. 우리나라에는 좋은 대학도 있지만 재단비리로 사회에 폐를 끼치는 학교도 많은 것은 다 아는 일로서 주인없는 대학의 표류는 같에서 지켜보기 딱할 지경이다.

대학을 설립하는 초창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건물하나를 짓는데 약 4-50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전입금이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양심이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개교 후 5년정도의 시간이 경과하여 학생수 3천~4천명의 수준이 되면 학교 스스로가 재단의 재원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구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는 학교의 구조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 재단은 학교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세명대학교는 연평균 3동이상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백억원이 투입된 건물도 있다. 이미 수천억원이 학교기반조성에 투입된 것이다.

이는 주인없는 학교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나는 자부한다.

둘째, 우리학교 교직원들의 인화와 협력이다. 비교적 젊은 연령의 구성원들의 생각은 진취적이며,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매우 강하다. 그것은 실력외에 인성을 중시하는 교직원채용 시스템 덕분이다. 재단의 투명한 운영도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셋째는 취업률로서, 세명대학교와 대원과학대학의 취업률이 항상 전국 상위권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대학의 구성원뿐만 아닌 제천시민의 자랑이기도 하다. 그것은 실용중심의 교육과 학생들의 끈에서 그들의 성취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는 교직원들의 노력과 그에 호응하는 학생들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세명대학교 침용측제.

내가 실용중심의 교육과 취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학교가 아직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다른 학교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고육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 본연의 목적인 인성교육을 등한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대원과학대학 교수식당에 대학(大學)의 한 구절을 써 놓았다.

'大學之道는 在明明德하며 在親民하며 在止於至善이니라'

'大學(대학)의 道(도)는 밝은 德(덕)을 밝히는데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친화)함에 있으며 지극한 善(선)으로 다다르게 함에 있느니라.'

교수들로부터 인격과 인성을 도야해서 그것을 세상에 밝게 펴는 일이 교육의 정도이다.

여기에 감화된 학생들이 다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여 이상적인 사회체제를 만드는 일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교육사업을 하는 목적이다.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하늘이 내게 경제적 여유를 허락한 것은, 바로 이런 일에 나를 쓰기 위함이었다고 믿고 신명을 바쳐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우리학생들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된 인간으로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수들과 직원들은 학생들을 자기 자식처럼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 교수들은 선발과정에서부터 한점 부정도 없이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실력과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채용한다.

'제 몫대로 자라는 쑥도 삼밭에서 자라면 곧게 자란다'는 옛 말이 있듯이 좋은 환경에서 치밀하게 관리해 주면,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생명의 복 어너 지

나눔, 완전한 사람으로 가는 길

권선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

포유류 중에 미숙아로 태어나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이다. 듣고 보니 그 말이 정말 맞다. 다른 동물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걷고 일어서지만 유일하게 사람만이 누워서 자리를 보전한다. 한마디로 미숙아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미숙아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누워서 있던 아이는 일어나 앉고 엄마 자나깨나 기어다니기 시작하다가 일어서고 두 발로 걷는다. 그 과정이 대략 1년이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디 그 뿐이랴. 젊었을 땐 혼자 잘 다니다가도 세월이 지나 늙었을 땐 또다시 도움을 필요로 한다. 구석구석 아픈 곳이 생겨나면서 자리 보전을 하게 된다. 결국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과정에 남의 도움을 받는 미숙아이다.

그러니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시기에는 남을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나눔만이 완전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다.

인디언들이 말하는 인간의 의무에 관한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은 매우 신성한 의무를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인간은 신에게서 받은 특별한 선물을 다른 생명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 인간은 삶아 있는 모든 것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무척 자랑스럽게 여겨진다.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 과연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결국 우리는 상상 이외의 능력자란 말이다. 모든 것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에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는 얼마 전 우리나라를 뜨겁게 만든 신부님이 계셨다.

'울지마 톤즈' 란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는 감동이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아프리카 수단이란 나라에서 척박한 현실 속에 선교 활동을 펼치다 세상을 마감한 그는 진정한 나눔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부산에서 태어난 이태석 신부는 근처 성당을 놀이터 삼아 유년시절을 보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상비노짐을 하며 10남매를 키우신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공부도 잘하고 신앙심도 깊은 그였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에서 놀던 중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된다.

다미안 신부는 하와이 근처 몰로카섬에서 한센인을 돌보다가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 49세에 숨을 거둔 성인이셨다. 그분의 영화를 보던 어린 이태석은 큰 감동을 받고 자신도 신부가 되어야 겠다며 마음을 먹었다.

훗날 인제 의대를 졸업한 그는 집안의 기둥이었지만 어린 시절 사제가 되겠다던 결심을 지울 수 없었다. 이미 신부가 된 형과 수녀가 된 누이가 있었던 터라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신부가 안 되면 안되겠냐며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자꾸 끌리는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 결국 신학대를 진학했고 사제가 되었다.

신부가 된 그는 아프리카 수단으로 향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인 수단은 내전으로 황폐해졌고 특히 남수단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갔다. 그가 찾은 곳은 남수단의 톤즈란 곳이었고 그곳의 유일한 의사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하루 300명 환자를 돌보며 생각했다.

이럴줄 아시고 미리 의사 공부를 시켜 준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사람들 사이에서 '톤즈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파졌고 100km를 걸어오는 환자들도 있었다.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었기에 손수 시멘트를 구입하고 모래밭 파와 벽돌을 만들어 병원을 짓고, 전기가 없어 지붕에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한 뒤 냉장고를 돌려 전염병에 필요한 백신들을 보관했다. 속수무책으로 말라리아 콜레라로 죽어가던 톤즈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나갔다.

병원을 돌보는 일과 함께 그는 톤즈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또 나누고자 했다. 보통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나 성당을 짓는 것이지만, 그는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학교라는 생각에 폐교를 수리하여 학교를 세웠다. 문맹이며 평소 총과 칼을 들고 놀던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누고자 했기에 톤즈엔 초중고 11년 과정의 학교가 세워졌다. 스스로 수학과 음악을 가르쳤다. 음악에 대해 잘 몰랐던 그였지만 직접 설명서를 보며 악기를 가르치는 등 안 되면 되게 하는 정신을 발휘했다. 하여 현지 청소년들을 모아 조직한 군악대는 국가적인 행사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톤즈의 희망이 되었다.

졸리 신부, 이태석 신부의 현지 이름이다. 그가 수단에 간 이후로 톤즈의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희망을 얻기 시작했다. 아낌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며 희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수단의 슈바이처로 활동하던 그였지만 2009년 말기 암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결국 向年의 일기로 천국으로 떠났다. 그의 죽음에 톤즈 시민들은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태석 신부의 아름다운 나눔과 희생이 웬만해선 움직 않는다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것이다. 그는 다시 톤즈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뜰지만 나눔으로 인해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인생은 완벽했단 생각이 든다. 평범한 사제로, 평범한 의사로 살았다면 누릴 수 없었을 것을 9년 사역을 통해 이룬 것이다. 그는 천국으로 떠나기 전 하늘나라 수학 공식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면 우리가 가진 것이 십분의 일로 줄어드는 속세의 수학과는 달리 가진 것 하나를 열로 나누었기에 그것이 천이나 만으로 부푼다는 하늘나라의 참된 수학, 끊임없는 나눔만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행복 정석을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이처럼 나눔은 인생을 아름답고 완벽에 이르도록 도와준다. 나눔은 이태석 신부와 톤즈의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을 잇는 긍정의 끈이 되어 지금까지도 그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나눔 것이 없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마음 하나만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다. 마음이 준비되면 나눔 것은 무한히 생겨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연도 나눌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달의 詩

고구꽃

시인 권오창

마사토 마당가
과꽃 몇 그루가
악매이게 자라
창백한 얼굴로
울면서 졸라댄다
먹이 달라고

비가 자주 오는 여름날
밥을 푸근하게 주었지
이것들이 배가 불러
무럭무럭 잘 자라
나를 보면 고맙다고
감사 인사하지요

통통하게 살찌
튼튼하게 잘 자라
웃기가 번들번들
선명한 꽃송이
보라 꽃 빨간 꽃
분홍 꽃 하얀 꽃
과꽃 잔치가 벌어졌어요

노동법해설 |

임금결정 원리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하여

권오일(복아공학 35세 한국정보평가협회 회장)

1. 임금결정의 원칙과 기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에 하나가 임금이 될 것이다.

임금결정의 원칙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금 수준은 ① 근로자의 생계비, ② 생산성, ③ 기업의 지급능력, ④ 국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되고, 임금체계는 각종 수당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상여금이 본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고정급화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소위 포괄임금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임금 관련 조항이 배제될 수도 있다.

상여금은 노동관계 법령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명시하여 운영하면 된다.

2. 최저임금제의 의의 및 적용범위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그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다.

헌법 제32조제1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기초로 1986.12.31.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 중에 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추이를 보면

① 1988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 ② 1989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광업·건설업, ③ 1990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전 사업장, ④ 1999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 ⑤ 2000년 전 근로자(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⑥ 2005년 전 근로자 이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3. 최저임금 적용 방법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이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구분은 이전에 설명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거의 같다.

예를 들면, ① 회사의 규정에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②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결혼수당, 김장수당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등), ③ 그밖에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월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된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게 되며, 주 40시간 근로제시행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월급이 130만원인 경우 시간당 임금은 130만원÷209시간=6,220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은 다음 표와 같다.

2007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480원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소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수 없다.

다음에는 임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